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일시 8월 19일(목) 14:00-15:00

장소 줌 토론회  YouTube 박흥근TV 생중계

* 코로나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대면 토론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제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발제	위기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박사
토론	• 동물복지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한계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김도희 변호사 • 아동복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방향 제시 -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 •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민간참여 확대 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과장



주최 | 동물복지국회포럼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자유연대 · 동물권행동 카라 · 한국법제연구원

토론회 순서

◆ 인사	
14:00-14:09	내빈 소개 및 인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 주제 발표	
14:09-14:24	발제1 동물복지 거버넌스와 안전정 정책 수립 시행 기반 구축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패널 토론 (좌장 :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14:24-14:30	토론1 동물복지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한계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
14:30-14:36	토론2 아동복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방향 제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14:36-14:42	토론3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민간참여 확대 방안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14:42-14:59	자유토론
15:00	정리/폐회

[개 회 사]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의원 박홍근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함께 준비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조금씩 성장해온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1년 ‘동물보호와 국민의 정서함양’중심의 단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다가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지금은 47개 조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중심의 적극적인 동물복지제도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수준 높은 국민적 인식과 요구에 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동물 학대범죄와 개물림 사고 등이 계속되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날개가 아닌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입법대안으로 묶어 법안 발의와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출발은 2015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출범한 이래 매우 유익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온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기투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전부개정안 형태로 담아보자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 드렸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까지 잘 마무리되면서 오늘 토론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토론회의 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보호, 복지, 관리와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정책수립 및 시행체계 등 동물보호법 전반에 걸쳐있습니다. ▲그동안 반려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동물학대 예방체계 마련, 동물판매업 허가영업 변경과 더불어 ▲등록대상동물 관리의무 강화, 맹견 사육 허가제 등 국민안전과 반려견 안전관리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설 등을 다루게 될 것이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입과 동물복지진흥원 등 새롭게 제기되는 제도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도 집중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회 주제와 내용에는 더 이상 추가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된 내용도 있지만, 관계 단체들과 입장을 조율해야할 쟁점들도 있고, 관계부처와 풀어야할 난제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쟁점은 쟁점대로 이견을 좁히고, 난제는 난제대로 해법과 동력을 마련하는 성과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토론회의 성과는 8월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발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모든 동물복지역량과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고양된 국민적 인식과 정치적 분위기로 어느 때보다 입법의 여건은 고무적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더욱 탄력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물복지 전면 개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봅시다.

감사합니다.

2021. 8. 17

국회의원 박 홍 근

[축 사]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현승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포럼 회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법제연구원과,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관련 이슈가 방대해지면서, 동물보호법의 골격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포럼에서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방안을 열심히 논의해 왔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국 사례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기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 다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개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해왔던 전부개정 방안을 국민들에게 공유드리고,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의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동물보호법이 국민들의 공감 속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담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4일에 걸쳐 많은 전문가분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십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7

국회의원 이 헌 승

[축 사]



반갑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입니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홍근, 이현승 공동대표 의원님, 그리고 한준호 책임연구의원님을 비롯한 회원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함께 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카라와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았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단 12개 조문이었지만,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비판으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타 법률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이 반영되었고, 지난달에는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동물권의 달라진 시대상에 따라 전면적인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동물복지 및 동물이용의 윤리성 강화, 동물 관리 강화, 또한 이를 실행해나갈 수 있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동물보호법이 기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은 시대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같은 철학적 가치가 이번 개정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동물권 향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 8. 17

국회의원 한 정 애

[축 사]



안녕하세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국회의원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입니다.

시의적절하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해주신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카라, 농식품부, 그리고 전문가 패널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인류와 동물은 함께 공존하는 동반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반려인이 늘어나면서 동물의 기본권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 문화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물 자체에 대한 인식과 문화, 법적 보호와 체계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체험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이동형 동물원’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동물 학대 처벌기준, 등록 대상 동물 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이 강화되어 동물권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해 학대하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질 동물보호 체계 정비와 동물 복지 전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동물보호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는 솔루션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이 존중받고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 8. 5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 한 준 호

[축 사]



반갑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먼저 언제나 동물복지의 향상에 앞장서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 그리고 소속 의원님들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료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동물보호법 제정 및 시행으로부터 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 제정 및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법률로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 목적 및 상징성과는 달리 총 12개의 조문으로 실효성 없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법률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몇 차례 일부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조항과 처벌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 미흡하나마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의 복지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오늘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고양이N번방사건’과 같이 동물학대는 날로 잔혹해지고, 한해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두 해 연속 13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또 지난해 동물실험에 희생된 동물의 수는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인 414만 마리를 기록했습니다.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탄식이 끊이질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을 위해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큼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의 관점에서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반영한 법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대로부터 다른 생명체인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동물복지와 동물권리는 이러한 ‘인간다움’이라는 화두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보호와 이용,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우리사회의 '인간다움'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은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분명한 괴리가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렇듯 머리를 맞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번 토론회의 귀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사회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정에도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7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 희 경

[축 사]



우리 동물보호법이 제정 된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아쉬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선언에 그쳤던 최초 동물보호법은 시대의 변화, 동물들에 대한 국민 인식의 향상과 더불어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상향,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과 같은 영업 규제 강화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실효적인 동물학대 행위의 제어와 예방이나 인간과 동물의 이익 충돌 지점에서 어떻게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법적 보장은 여전히 묵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성년자 해부 실습의 전면 금지나 생매장 살처분 행위의 처벌, 그리고 개식용행위에서 파생되는 극단적 동물학대 행위의 원천적 금지 같은 주요한 동물권 침해 행위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반려동물로 등록해야 할 대상을 ‘반려목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스스로 법을 무력화한다거나 학대자에게서 압수한 피학대 동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아이러니, 이 외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최근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성이 더 이상 그들을 물건과 동일한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번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시도에 대해서는 법체계의 기술적 정비, 학대자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려 한 점,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상향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민의식과 발맞추고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는 생명존중과 실효적인 학대 제어에는 못 미치고 있어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연석 토론회를 거쳐 금번 법 개정을 확보, 현실화하고 이후 발전적 추가 개정을 위해 무

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하고 합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동물복지포럼 그리고 특히 언제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 하시며 현장에 나서주시는 박홍근 의원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와 법제연구원에도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1. 8. 17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 진 경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계홍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에 공동주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의 박홍근 의원님, 이현승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물의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님,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님,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정책과 실무담당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물과 관련한 너무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동물보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서 다루다 보니, 각각의 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를 하다보면,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다가 정작 고려했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놓쳤던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 8. 17.

한국법제연구원장 김 계 홍

목 차

발 제

동물복지 거버넌스와 안전정 정책 수립 시행 기반 구축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토론

01. 동물복지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한계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

02. 아동복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방향 제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03.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민간참여 확대 방안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4.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발 제

동물복지 거버넌스와 안전정 정책 수립 시행 기반 구축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차 토론회

동물보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

“동물복지 거버넌스와 안정적 정책 수립 시행 기반 구축”

2021.08.19(목) 14:00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4차 전문가 토론회

장 은 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21.8.19.(목)



한 국 법 제 연 구 원

동물복지 거버넌스와 안정적 정책 수립 시행 기반 구축

-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1.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2. 시·도 동물복지위원회
- 정책수립 및 시행기반 구축
 1.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
- 참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
 -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른 변화 가능성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1.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2. 시·도 동물복지위원회

KLRI 1.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1)

-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변경
 - (현재) 호선 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된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KLRI 1. 동물복지거버넌스 강화 (2)

-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
 -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위원회 자문사항
 - 동물복지정책의 집행,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5

 한국법제연구원

KLRI 2. 시·도 동물복지위원회 (1)

-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등
 - 시·도지사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현행 규정 유지)
- 시·도 동물복지위원회(규정 신설)
 - 시·도지사는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함

6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정책수립 및 시행기반 구축

1. 동물복지진흥원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
3.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KLRI 1. 동물복지진흥원 (1)

●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
- 진흥원은 법인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KLRI 1. 동물복지진흥원 (2)

- 동물복지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 1)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 분석
 - 2)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3)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의 지원
 - 4) 기질평가에 관한 기술지원
 -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관한 자격관리 업무의 지원
 - 6) 동물학대방지과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 7)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 8) 동물실험 대체방법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 9)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의 지원
 - 10)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지원
 - 11) 영업자에 대한 점검 지원
 - 12) 동물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한국법제연구원

KLRI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1)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정보
 - 2) 맹견사육허가, 허가철회를 받은 사람 및 허가받은 사람이 소유한 맹견에 대한 정보
 - 3) 기질평가를 받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
 - 4) 영업의 허가 및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5) 실태조사 관련 정보
 -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10

한국법제연구원

KLRI 3.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함. 다만, 2)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1)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 2)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 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3)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 4)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6)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 8)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 9)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한 사항

KLRI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의 의의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종래 물건 개념을 변경
 - 이 규정은 동물을 권리 주체, 즉, ‘사람’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님
 - 동물을 인간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결정과 책임능력을 지닌 인간과 같은 존재로 취급할 수는 없음
 -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하여,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동물의 객체성이 폐지되지는 않음
 - 다만, 이 규정이 신설될 경우, 동물에 관한 법적인 취급이 물권법상 지배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니라, 다른 법률, 특히 동물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특별한 존재로 전환된다고 보는 분기점이 됨

13

KLRI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가능성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에 따른 변화 가능한 쟁점들
 1. 동물치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 아직 우리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독일 민법 규정은 참고가 될 수 있음. 독일민법 제251조제2항제2문에서는 “피해 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 규정
 - 기존 손해배상 조항들에 따라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는 동물의 시장가액의 최고가격에 따른 배상을 하면 될 뿐, 동물의 시장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치료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한계가 문제될 수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사고 등에서 가해자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14

KLRI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가능성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규정에 따른 변화 가능한 쟁점들

2. 소유권 관련 조항의 변화 가능성

- <참고: 독일 민법 제903조>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 “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의 행사시에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우리 현행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 동물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특별준수의무와 같은 것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동물학대와 같이 부당한 소유권 행사가 있을 경우 권리남용을 들어 소유권 제한, 소유권 상실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필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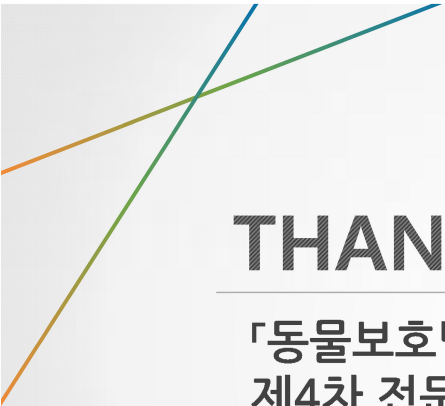
KLRI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 가능성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규정에 따른 변화 가능한 쟁점들

3. 강제집행 관련 조항의 변화 가능성

- 영업동물, 농장동물까지는 아니어도 “반려동물”의 경우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검토 가능성
 -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강제집행시 압류의 범위, 압류금지대상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열거(민사집행법 제196조)
 - 반려동물에 대한 원칙적인 압류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 검토

16



THANK YOU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제4차 전문가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4.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토론 ①

동물복지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한계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

동물복리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동물 정책

20210819 김도희

‘동물복지진흥원’에 관하여, 지금까지 변변한 체계없이 편의적,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물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조직 마련을 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발제 내용에 관하여 조직의 필요성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로 동의하나, 명칭, 조직 유형 등 일부 고민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첨언하고자 합니다.

1. 왜 진흥원인가

- ‘-진흥원’은 공공기관에서 낯설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기관명이나, 본 조직명을 ‘-진흥원’이라 명명하는 데 대하여는 고민. ex, 사회서비스원 논란
- 사전적으로 ‘진흥’이란 어떤 것/활동을 통하여 기운이나 세력이 활발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무역을 진흥하다’, ‘학문을 진흥하다’, ‘산업을 진흥하다’와 같이 어떤 것을 사업적으로 부흥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
- 그런데 동물복지를 진흥한다는 것은,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물 정책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인지에 대하여는 의문
- 이미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세, ANT, 원헬스 등 인간만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라는 시각에 대한 반성이 일고, 탈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을 제시
- 새 술을 담을 새 부대에 담으면서 동물을 자원이나 대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상을 주는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지, 가령, ‘동물권리보장원’과 같은 명칭이 동물을 객체로 보지 않으면서 보호와 안전, 복지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왜 농림부 산하인가

- 지금까지 동물보호 정책의 상당 부분을 농림부에서 해왔고, 동물복지가 가장 필요한 곳이 농림부일 수 있음.
- 그러나 동물복지진흥원이 설립되어도 여전히 실험동물이나 영업 관련은 식약처와, 반려동물 관련은 복지부와, 유기유실 동물 관련은 환경부와 협조가 필요
- 여러 부처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 한 부처에서만 관장하게 되는 경우 폐쇄적인 행정구조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음. ex.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
- 정부에서 동물 관련 정책개혁에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 부처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가령,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하여 각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운용할 필요

3. 지자체의 역할은 어디에

- 본 발제는 중앙차원의 통합적인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므로 주제에서 다소 벗어날 수는 있지만, 현재 동물 관련 정책, 특히 동물보호 관련 정책은 지자체에서 권한과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결국 정책의 손발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에 중앙과 어떻게 분배하고 사각없이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움. ex. 진도군, 완도군 사례
-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맡겨둘 경우 지역간 예산, 인력, 의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

4. 민법 개정안에 관하여

-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인간과 같은 자연인으로서의 법인격을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이라는 데는 수긍
- 그러나 인간의 공동체속에서 동물이 자기결정과 책임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존재로 취급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움.
- 우리 법제는 이미 자기결정과 책임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인간을 위한 보완적인 법제가 상비되어 있음. ex. 대리인, 보조인, 후견인 등
- 인간과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등과 같은 법령이 이미 동물의 특별한 권리주체성을 예비하고 있음.
-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동물의 권리주체성을 부정하기 보다는 동물의 복리를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도들이 중요함.
- 소유권 관련 조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특히 현행 민법 제211조 뿐만 아니라 동보법 제14조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유자의 학대나 착취로 격리한 동물을 기간내에 보호비용만 지불하면 다시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은 매우 부적절함.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 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 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 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강제집행 관련 조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는, 영업동물,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ex. ASF로 인한 살처분시 반려인의 주거에서 동거하는 반려돼지를 살처분한 사례
- 압류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는 인간과의 반려여부나 인간의 동물 ‘이용목적’보다는 동물의 복리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4.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토론 ②

아동복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방향 제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아동복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21.08.19



01. 정책수립



A. 정부

구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현)	동물복지위원회(개정안)
위원장	국무총리	농림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중 호선	공동위원장(농림부 차관과 호선된 민간위원)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 관련부처 장관 및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산하 아동정책심무위원회 설치)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성격	심의·의결기구	자문기구	자문기구(일부 심의)
기능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1.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시노·감독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1.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심의) 2. 동물복지정책의 집행,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01. 정책수립



B. 지자체

구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시·도 동물복지위원회(개정안)
위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불가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위원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함
성격	심의·의결기구	확인불가
기능	1.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2.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

01. 정책수립



C. 정부

(1) 기구의 위상

-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산하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아동정책 실무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 내에서 조율 및 조정 가능
-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호선된 민간위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함으로써 부처 내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2) 기능의 한계

-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부터 예산지원,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등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 수행
-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정책 평가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추가해 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종합계획은 5년 마다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문기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기능적 한계가 존재하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01. 정책수립



(3)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 모호

- 아동복지의 경우 지자체 거버넌스 기구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의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현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설치(17개 시·도 중 5개).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그 기능은 자문기구인지 심의·의결기구인지 모호

02. 정책의 시행



구분	아동권리보장원(개정 2020.12.29)	동물복지진흥원(개정안)
목적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 수행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 →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역할/기능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4.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 분석 2.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의 지원 4. 기질평가에 관한 기술지원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관한 자격관리 업무의 지원 6. 동물학대방지와 피해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7.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8. 동물실험 대체방법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9.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의 지원 10.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지원 11. 영업자에 대한 점검 지원

02. 정책의 시행



A. 불분명한 설립 목적

- (1)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
- (2) 동물복지진흥원은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그 목적이지만 무엇을 통해서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

B. 모호한 기관의 성격

- (1)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기관으로써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 수행. 아동정책 연구/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현장활동 기관의 역량 강화, 평가, 교육 등의 지원조직의 사업 수행
- (2) 반면 동물복지진흥원은 모호한 설립 목적 만큼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며, 지원 조직인지 현장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알 수가 없음. 개정안에 포함된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관된 기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02. 정책의 시행



C. 부적절한 업무설정

- (1) 동물복지진흥원의 업무중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 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지원업무로 구성
- (2)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지원업무라 하더라도 '기술지원'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그 수행범위를 명시. 반면 동물복지진흥원의 경우 무엇을 지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을뿐 아니라 주어진 지원업무 역시 부적절
- (3) 예를 들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 영업자에 대한 점검은 각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업무로 별도 법인 성격을 지닌 진흥원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 동물실험 대체방법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역시 식약처 산하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 모호
- (4) 정책의 수립으로부터 시행의 과정에 있어 중앙기관으로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

03. 결론



A.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 (1) 아동복지가 그러한 것처럼 동물복지 역시 환경부, 식약처 등 여러 유관 관서 존재. 이러한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설치 그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또한 현재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과 같은 명목상의 심의가 아닌 심의·의결기구로서 역할 강화 요구. 적어도 정책수행에 관한 사항, 평가,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는 심의기능 필요

B. 동물복지진흥원의 성격 및 역할 조정

- (1)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듯 동물복지진흥원 역시 현장에서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을 전제로 이를 지원하고 평가하는 역할로 조정 필요
- (2) 진흥원은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만큼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설정해야 함. 자격관리, 인증업무,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의 사항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반복적인 행정업무로 이를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
- (3) 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 개발, 평가와 역량강화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주제4.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토론 ③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민간참여 확대 방안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민간의 참여 확대 방안

2021. 8. 1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1.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주요 변경 사항

	현 행	개 선
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1인)	공동(농식품부 차관, 호선 민간위원)
위원수	10명 이내, 민간 전문가	20명 이내, 관계부처 참여
분과위	<신설>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가능
기 능	자문	심의(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자문
지역위	<신설>	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필요성 및 추진방안

- ▷ 필요성 : 동물 보호·복지 관련 부처간 협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민간 참여
- ▷ 추진방안
 - (분과위)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종합계획 상 구성안 : ① 국민인식 개선, ② 동물연관 산업, ③ 동물실험, ④ 농장동물



1.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성 및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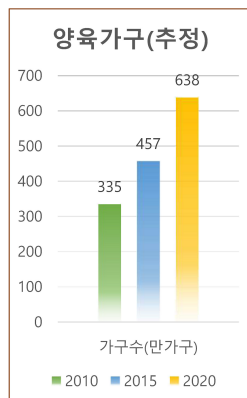
- (기능) 심의 및 자문
 - * 심의 사항 : **동물복지 종합계획**(5년마다, 2024년 3차 계획(2025~2029) 수립)
 - * 자문 사항 : 연 4회 이상 자문회의 개최
 - ① 동물복지정책의 집행,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②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
 - ④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지역위원회) 시·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운영(조례로 정함) 근거 마련
 - * 기능 : 시·도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정책 종합·조정
 - ※ 동물복지위원회 既구성·운영 중인 시·도 : 서울(15인), 부산(10), 인천(10), 대전(15), 경기(1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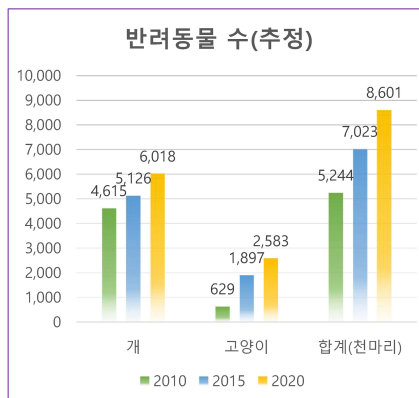


2. 동물 보호·복지 정책 지원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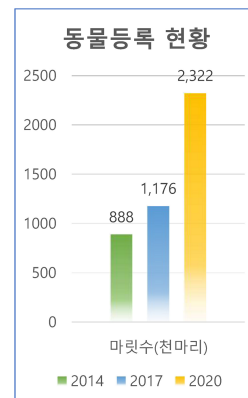
정책 수요 등 여건 변화(1)



[출처]농식품부,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출처]농식품부,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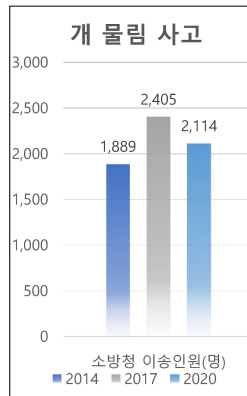
[출처]농식품부, 2020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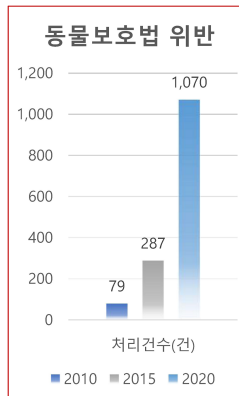


2. 동물 보호·복지 정책 지원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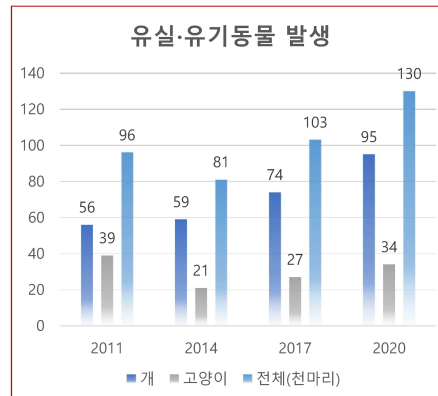
정책 수요 등 여건 변화(2)



[출처] 소방청, 2021.4.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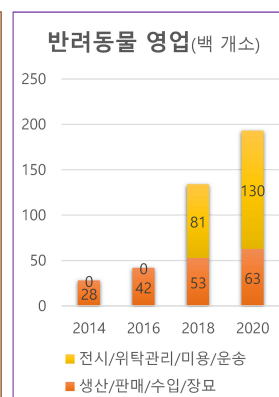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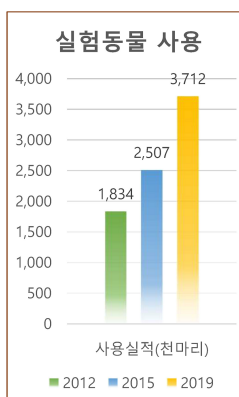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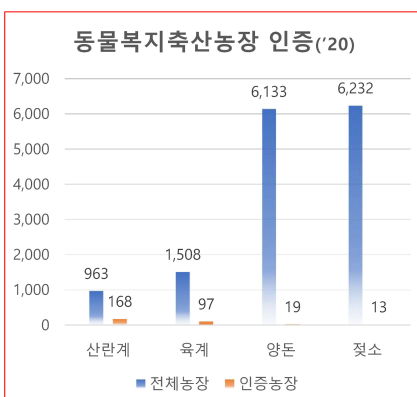


4

2. 동물 보호·복지 정책 지원기능 강화



정책 수요 등 여건 변화(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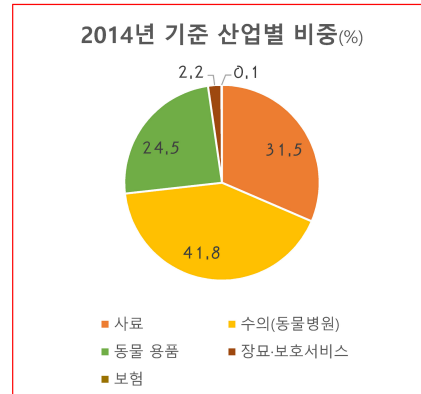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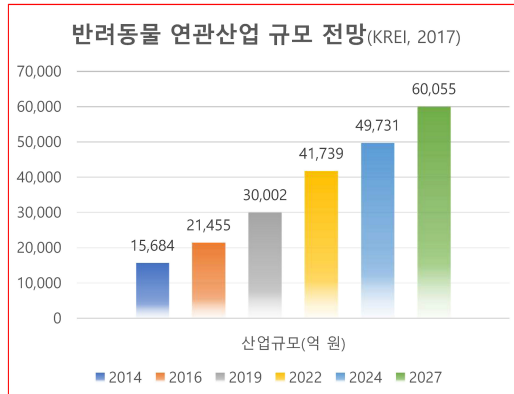


5

2. 동물 보호 · 복지 정책 지원기능 강화



정책 수요 등 여건 변화(4)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6

2. 동물 보호 · 복지 정책 지원기능 강화



전담기관 운영 필요성(1)

- ① 동물복지 정책 연구
 - 국내외 사례에서는 관련 정책 기본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를 편성·운영하고 있음 (예,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 ② 동물학대 예방 기획 및 위반 관리 지원
 - 동물학대 및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조사·조치하는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예,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 ③ 동물실험 감독 및 관리
 - 국내 동물실험 수 증가와 고통등급이 높은 실험 비중이 높아 동물실험윤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될 필요(예,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사업단)
- ④ 현장 운영기관 지원 및 동물 영업시설 관리
 - 국내 반려동물 영업시설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도·점검할 현장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별 동물복지 인프라 수준이 상이함

[출처] 2020, 동물보호복지 전담기관 설립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7



2. 동물 보호·복지 정책 지원기능 강화

전담기관 운영 필요성(2)

⑤ 동물 등록 및 이력 관리

- 동물등록 비용이 여전히 낮고 주기적인 등록정보 관리가 미흡하며, 해외에서는 반려 동물등록 전담부서를 두고, 국내에서도 축산물이력제가 시행 중임(예, 축산물품질평가원)

⑥ 동물복지 교육 및 자격 관리

- 국내 동물복지 관련 자격은 모두 민간자격으로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
(예,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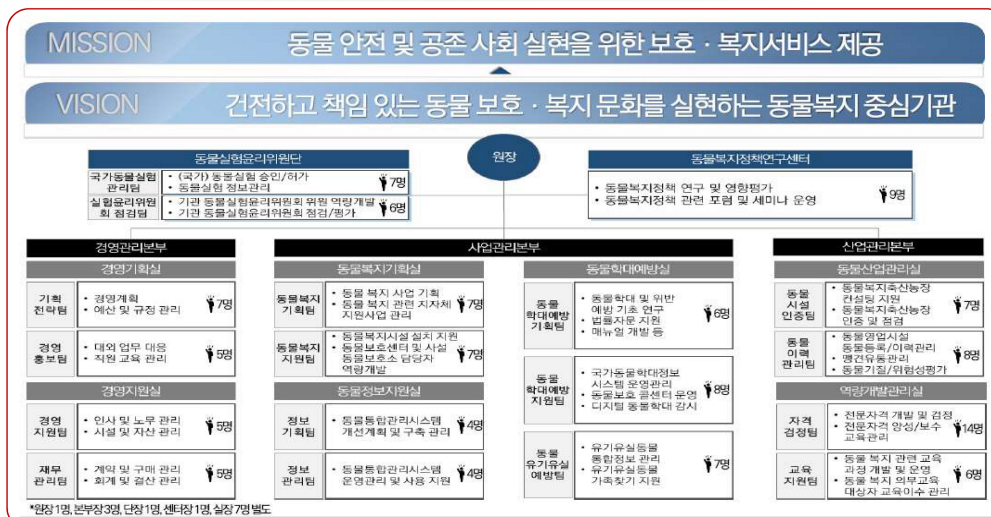
⑦ 동물 유실·유기 및 입양 관리

- 국내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행정 부담의 경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국내의 실종아동 및 입양지원 전담기관 운영사례 참고할 필요(예,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입양인지원센터 등)

[출처] 2020, 동물보호복지 전담기관 설립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8

2. 동물 보호·복지 정책 지원기능 강화



[출처] 2020, 동물보호복지 전담기관 설립 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9

2. 동물 보호 · 복지 정책 지원기능 강화



도입 검토 중인 새로운 정책

- 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병과
- ② 기질평가제 도입, 위험한 개의 맹견 지정·관리, 맹견 수입신고제 및 사육허가제 도입
- ③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및 동물 인수제(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도입
- ④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운영, 윤리위 변경심의/심의 후 감독/실험중지요구 신설
- 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지정, 인증갱신제 도입,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등 표시 강화
- 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보수교육 등 자격관리 업무 발생)

국내 유사 기능 공공기관 현황

아동보육	청소년	여성	장애인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 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0

2. 동물 보호 · 복지 정책 지원기능 강화



전담기관 설립(안)

구 분	주 요 내 용
명 칭	■ 동물복지진흥원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립
법적지위	■ 법인(재단법인)
성립요건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주요기능 (업무)	■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 분석 ■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 기질평가에 관한 기술 지원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관한 자격관리 업무 지원 ■ 동물학대 방지, 피학대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 동물실험 대체방법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동물실험윤리위 지도·감독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 및 영업자에 대한 점검 지원 등
재원조달	■ 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11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